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변화 대응 연구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립농업과학원 농업환경부에 두는 기후변화생태과를 기후변화평가과로 개편하고, 농자재 안전성 평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립농업과학원 농산물안전성부에 두는 화학물질안전과 및 농자재평가과를 각각 잔류화학평가과 및 독성위해평가과로 개편하며,

미생물을 활용한 폐농자재 분해 실용화 연구를 강화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국립농업과학원에 환경개선미생물연구단을 신설하고, 쌀의 적정한 생산 및 소비촉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에 두는 식량산업기술팀의 존속기한을 2020년 10월 31일까지에서 2022년 10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민간인근로자의 노무관리 및 농업과학관의 전시(展示) 기획·운영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인력 2명(6급 1명, 연구사 1명)의 존속기한을 2020년 10월 31일까지에서 2022년 10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실용적인 조직·인력 운영을 위하여 농촌진흥청 및 소속기관의 인력 13명(6급 1명, 7급 3명, 8급 5명, 9급 1명, 연구사 3명)의 직급을 상향(5급 1명, 6급 3명, 7급 5명, 8급 1명, 연구관 3명)하며, 행정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 정원 2명(지도사 2명)의 직렬을 복수직렬(6급 2명)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0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6. 00. ~ 6.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기술지원팀”을 “기술지원팀 및 환경개선미생물연구단”으로, “농촌지도관”을 “농촌지도관으로, 환경개선미생물연구단장은 농업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환경개선미생물연구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잔류농약, 폐플라스틱 분해 미생물(이하 “환경정화 미생물”이라 한다)의 탐색, 선발
2. 환경정화 미생물의 기능 활용에 관한 연구
3. 환경정화 미생물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신소재 개발에 관한 연구
4. 환경정화 미생물의 산업화에 관한 연구

제12조제2항 중 “기후변화생태과”를 “기후변화평가과”로 하고, 같은 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후변화생태과장”을 각각 “기후변화평가과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제4항 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농업기상 정보 분석 및 활용체계 구축

3. 농업분야 기후변화 실태조사 및 영향·취약성 평가에 관한 연구
제12조제5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농업생태계 건전성 유지·보전 및 유용 생태자원이용 연구

제13조제6항제2호 및 제4호 중 “유용미생물”을 “유용미생물(환경정화 미생물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토양·환경 정화용 미생물 등 유용미생물”을 “유용미생물(환경정화 미생물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화학물질안전과”를 “잔류화학평가과”로, “농자재평가과”를 “독성위해평가과”로, “화학물질안전과장”을 “잔류화학평가과장”으로, “농자재평가과장”을 “독성위해평가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화학물질안전과장”을 “잔류화학평가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7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농약의 잔류 시험기준과 방법 설정 및 등록평가 기법 개발

8. 등록신청 농약의 작물 및 환경 잔류성, 이화학성 평가

9.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및 잔류허용기준 설정 연구

10. 농약원제·제품의 분석법 개발 및 품질관리에 관한 연구

11. 비료의 품질·안전성 평가와 평가기준설정에 관한 사항

제14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자재평가과장”을 “독성위해평가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시험기준”을 “약효·약해·독성시험

기준”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및 잔류성 평가”를 “평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농약” 및 “평가”를 각각 “농약·유해물질” 및 “연구”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농약의 이화학적성,”을 “농약의”로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한다.

별표 2 중 행정주사·사서주사·공업주사·농업주사·식품위생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농업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44”를 “46”으로 하고, 농촌지도사 “25”를 “23”으로 한다.

별표 3 중 기술서기관·농업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농업연구관 2 다음에 “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1”을 신설하고, 행정주사·사서주사·공업주사·농업주사·식품위생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농업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47”을 “48”로 하며, 행정주사·사서주사·공업주사·농업주사·식품위생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농업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48(중전의 행정주사·사서주사·공업주사·농업주사·식품위생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농업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47) 다음에 “행정주사·공업주사·농업주사·시설주사·방송통신주사·농업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1”을 신설하고, 행정주사·공업주사·농업주사·시설주사·방송통신주사·농업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1 다음에 “농업주사 1”을 신설하며,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농업주사보·시설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농업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18”을 “17”로 하고,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농업주사보·시설주

사보·방송통신주사보·농업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17(종전의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농업주사보·시설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농업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18) 다음에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농업주사보·농업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2”를 신설하며, 농업주사보 “10”을 “9”로 하고, 행정서기·공업서기·농업서기·농업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23”을 “21”로 하며, 농촌지도사 “25”를 “23”으로 한다.

별표 5 중 공업주사 “3”을 “4”로 하고, 행정주사보 “6”을 “8”로 하며, 공업주사보 “8”을 “7”로 하고, 행정서기 “23”을 “21”로 하며, 행정서기 21(종전의 행정서기 23) 다음에 “행정서기·공업서기 또는 식품위생서기 1”을 신설하고,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 또는 식품위생서기보 “11”을 “10”으로 하며, 농업연구관 “78”을 “80”으로 하고, 농업연구사 “242”를 “240”으로 한다.

별표 7 행정주사보 “3”을 “4”로 하고, 행정서기 “14”를 “13”으로 하며, 농업연구관 “75”를 “76”으로 하고, 농업연구사 “159”를 “158”로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92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중 “2020년 10월 31일”을 “2022년 10월 31일”로 하고, 같은 부칙 제3조 중 “2020년 10월 31일”을 “2022년 10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환경개선미생물연구단은 2022년 5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환경개선미생물연구단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환경개선미생물연구단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농업미생물과장이 분장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3의 정원 5명(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1명, 행정주사·공업주사·농업주사·시설주사·방송통신주사·농업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1명, 농업주사 1명,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농업주사보·농업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2명), 별표 5의 정원 6명(공업주사 1명, 행정주사보 2명, 행정서기·공업서기 또는 식품위생서기 1명, 농업연구관 2명), 별표 7의 정원 2명(행정주사보 1명, 농업연구관 1명)은 각각 2023년 6월 00일까지 존속하며, 2023년 6월 00일 이후에는 그 조정된 정원은 각각 별표 3의 행정주사·사서주사·공업주사·농업주사·식품위생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농업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1명,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농업주사보·시설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농업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1

명, 농업주사보 1명, 행정서기·공업서기·농업서기·농업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2명, 별표 5의 공업주사보 1명, 행정서기 2명,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 또는 식품위생서기보 1명, 농업연구사 2명, 별표 7의 행정서기 1명, 농업연구사 1명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국립농업과학원) ① 국립 농업과학원에 기획조정과·운 영지원과 및 <u>기술지원팀</u> 을 두 되, 기획조정과장 및 운영지원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 술서기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기술지원팀장은 서기관·기술 서기관·행정사무관·농업사무 관·농업연구관 또는 <u>농촌지도 관</u> 으로 보한다.	제11조(국립농업과학원) ① ---- ----- <u>기술</u> <u>지원팀 및 환경개선미생물연구</u> <u>단</u> ----- ----- ----- ----- ----- ----- <u>농촌지도</u> <u>관</u> 으로, <u>환경개선미생물연구단</u> <u>장</u> 은 <u>농업연구관·보건연구관</u> <u>또는 환경연구관</u> ---.
② ~ ④ (생 략) <u><신 설></u>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u>환경개선미생물연구단장은</u> <u>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1. <u>잔류농약, 폐플라스틱 분해</u> <u>미생물(이하 “환경정화 미생</u> <u>물”이라 한다)의 탐색, 선발</u> 2. <u>환경정화 미생물의 기능 활</u> <u>용에 관한 연구</u> 3. <u>환경정화 미생물을 이용한</u> <u>고부가가치 신소재 개발에 관</u> <u>한 연구</u> 4. <u>환경정화 미생물의 산업화에</u>

제12조(농업환경부) ① (생 략)

② 농업환경부에 토양비료과 ·
기후변화생태과 · 유기농업과
및 농촌환경자원과를 두되, 토
양비료과장은 기술서기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기후변화생태
과장은 서기관 · 기술서기관 ·
농업연구관 · 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유기농업과장
은 농업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
으로, 농촌환경자원과장은 농업
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
한다.

③ (생 략)

④ 기후변화생태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1. 농업기상과 기후변화에 대응
한 농업부문 연구

2. 농업생태계 건전성 유지 · 보
전 및 유용 생태자원이용 연
구

<신 설>

관한 연구

제12조(농업환경부) ① (현행과
같음)

② -----
기후변화평가과-----

----- 기후변화평가
과장-----

-----.

③ (현행과 같음)

④ 기후변화평가과장-----
-----.

1. 농업기상 정보 분석 및 활용
체계 구축

<삭 제>

3. 농업분야 기후변화 실태조사
및 영향 · 취약성 평가에 관한
연구

3. ~ 7. (생 략)

6. 농업부문 저탄소 녹색성장
기술개발

7. (생 략)

⑤ 유기농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6. (생 략)

<신 설>

⑥ (생 략)

제13조(농업생물부) ① ~ ⑤ (생
략)

⑥ 농업미생물과장은 다음 사항
을 분장한다.

1. (생 략)

2. 유용미생물 탐색, 선발 및 기
능 활용에 관한 연구

3. (생 략)

4. 유용미생물을 이용한 고부가
가치 신소재 개발에 관한 연
구

5. 토양·환경 정화용 미생물
등 유용미생물의 산업화에 관
한 연구

4. ~ 8. (현행 제3호부터 제7호
까지와 같음)

<삭 제>

7. (현행과 같음)

⑤ -----
-----.

1. ~ 6. (현행과 같음)

7. 농업생태계 건전성 유지·보
전 및 유용 생태자원이용 연
구

⑥ (현행과 같음)

제13조(농업생물부) ① ~ ⑤ (현
행과 같음)

⑥ -----
-----.

1. (현행과 같음)

2. 유용미생물(환경정화 미생물
은 제외한다) -----

3. (현행과 같음)

4. 유용미생물(환경정화 미생물
은 제외한다)-----

5. 유용미생물(환경정화 미생물
은 제외한다)-----

제14조(농산물안전성부) ① (생략)

② 농산물안전성부에 화학물질안전과 · 작물보호과 · 농자재평가과 및 유해생물팀을 두되, 화학물질안전과장은 기술서기관 · 농업연구관 · 수의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작물보호과장은 농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농자재평가과장은 기술서기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유해생물팀장은 농업연구관 · 수의연구관 · 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화학물질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략)

2. 농약을 제외한 유해물질의 사람 · 가축 및 환경에 대한 안전성 연구

3. (생략)

4. 농산물 유해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연구

5. · 6. (생략)

<신설>

제14조(농산물안전성부) ① (현행과 같음)

② ----- 잔류화학평가과-----독성위해평가과-----잔류화학평가과장-----

----- 독성위해평가과장-----

③ 잔류화학평가과장-----

1. (현행과 같음)

<삭제>

3. (현행과 같음)

<삭제>

5. · 6. (현행과 같음)

7. 농약의 잔류 시험기준과 방법 설정 및 등록평가 기법 개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④ · ⑤ (생 략)

⑥ 농자재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약의 시험기준과 방법 설정 및 등록평가 기법 개발
2. 등록신청 농약의 약효 · 약해 · 독성 및 잔류성 평가
3. 농약의 사람 · 가축 및 환경에 대한 안전성 평가
4.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및 잔류허용기준 설정 연구
5. 농약원제 · 제품의 분석법 개발 및 품질관리에 관한 연구
6. 농약의 이화학적, 생물활성 및 위해성 평가
7. 비료의 품질 · 안전성 평가와

발

8. 등록신청 농약의 작물 및 환경 잔류성, 이화학적 평가

9.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및 잔류허용기준 설정 연구

10. 농약원제 · 제품의 분석법 개발 및 품질관리에 관한 연구

11. 비료의 품질 · 안전성 평가와 평가기준설정에 관한 사항

④ · ⑤ (현행과 같음)

⑥ 독성위해평가과장-----
-----.

1. ----- 약효 · 약해 · 독성시험 기준-----

2. -----
----- 평가

3. 농약 · 유해물질-----
----- 연구

<삭 제>

<삭 제>

6. 농약의 -----

<삭 제>

<u>평가기준설정에 관한 사항</u>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농촌진흥청령 제292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92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제8조의 개정으로 신설되는 식량산업기술팀은 <u>2020년 10월 31일까지</u> 존속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 ----- ----- ----- <u>2022년 10월 31일</u>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간)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3의 행정주사·사서주사·공업주사·농업주사·식품위생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농업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정원 중 2명은 <u>2020년 10월 31일까지</u> 존속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간) ----- ----- ----- ----- ----- ----- <u>2022년</u> <u>10월 31일</u> -----.

신 · 구 정원 대비표

■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

농촌진흥청 공무원 정원표(제37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행정주사 · 사서주사 · 공 업주사 · 농업주사 · 식 품위생주사 · 시설주사 · 전산주사 · 농업연구 사 또는 농촌지도사	<u>44</u>	<u>46</u>	+2
·	·	·	
·	·	·	
농촌지도사	<u>25</u>	<u>23</u>	-2
·	·	·	
·	·	·	

■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3]

농촌진흥청 공무원 정원표(제37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기술서기관 · 농업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농 업연구관	· · 2	· · 2	
<u>행정사무관 · 사서사무관 · 공업사무관 · 농업사무 관 · 식품위생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 관 · 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u>	<u><신 설></u>	<u>1</u>	+1
· · 행정주사 · 사서주사 · 공업 주사 · 농업주사 · 식품 위생주사 · 시설주사 · 전산주사 · 농업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 · 47	· · 48	+1

<u>행정주사 · 공업주사 · 농업</u>				
<u>주사 · 시설주사 · 방송</u>				
<u>통신주사 · 농업연구사</u>				
<u>또는 농촌지도사</u>	<신 설>	<u>1</u>	+1	
<u>농업주사</u>	<신 설>	<u>1</u>	+1	
·	·	·		
·	·	·		
<u>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u>				
<u>농업주사보 · 시설주사</u>				
<u>보 · 방송통신주사보 ·</u>				
<u>농업연구사 또는 농촌</u>				
<u>지도사</u>	<u>18</u>	<u>17</u>	-1	
<u>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u>				
<u>농업주사보 · 농업연구</u>				
<u>사 또는 농촌지도사</u>	<신 설>	<u>2</u>	+2	
·	·	·		
<u>농업주사보</u>	<u>10</u>	<u>9</u>	-1	
·	·	·		
<u>행정서기 · 공업서기 · 농업</u>				
<u>서기 · 농업연구사 또는</u>				
<u>농촌지도사</u>	<u>23</u>	<u>21</u>	-2	

•	•	•	
•	•	•	
농촌지도사	<u>25</u>	<u>23</u>	-2
•	•	•	
•	•	•	

■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5]

농촌진흥청 공무원 정원표(제37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공업주사	<u>3</u>	<u>4</u>	+1
•	•	•	
•	•	•	
행정주사보	<u>6</u>	<u>8</u>	+2
•	•	•	
•	•	•	
공업주사보	<u>8</u>	<u>7</u>	-1
•	•	•	
•	•	•	
행정서기	<u>23</u>	<u>21</u>	-2
<u>행정서기 · 공업서기 또는</u>	<u><신 설></u>	<u>1</u>	+1
<u>식품위생서기</u>			
•	•	•	
•	•	•	
행정서기보 · 공업서기보 또	<u>11</u>	<u>10</u>	-1
는 식품위생서기보			
•	•	•	

•	•	•	
농업연구관	<u>78</u>	<u>80</u>	+2
•	•	•	
•	•	•	
농업연구사	<u>242</u>	<u>240</u>	-2
•	•	•	
•	•	•	

■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7]

국립식량과학원 공무원 정원표(제38조제2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행정주사보	<u>3</u>	<u>4</u>	+1
·	·	·	
·	·	·	
행정서기	<u>14</u>	<u>13</u>	-1
·	·	·	
·	·	·	
농업연구관	<u>75</u>	<u>76</u>	+1
·	·	·	
·	·	·	
농업연구사	<u>159</u>	<u>158</u>	-1
·	·	·	
·	·	·	